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개정대비표

2019.1.1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1조(약관의 적용) ~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생략></p> <p>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 align="center"><신설></p> <p>제4조(신탁금액) ~ 제28조(신탁계약서 작성) <생략></p> <p>[별표1] 신탁재산 운용방법</p> <p>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내지 6.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환매조건부채권 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5. 예금·적금·예탁금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p>※「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ELS·DLS(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ETN(상장지수증권), ELB·DLB(파생결합사채)를 말함.</p> <p>※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동일하지 않</p>	<p>제1조(약관의 적용) ~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현행과 같음></p> <p>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u>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u>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u>2021년 12월 31일</u>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u>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p> <p><u>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p> <p><u>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어민</u></p> <p>제4조(신탁금액) ~ 제28조(신탁계약서 작성) <현행과 같음></p> <p>[별표1] 신탁재산 운용방법</p> <p>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내지 6.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증권 <u>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u> 3. 환매조건부채권 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5. 예금·적금·예탁금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p><u>※「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u></p>	<p>금투협 예시안에 따라 변경</p> <p>금투협 예시안에 따라 변경</p> <p>금투협 예시안에 따라 신설</p> <p>금투협 예시안에 따라 변경</p> <p>금투협 예시안에 따라 변경</p>

~~음에 유의~~

- 정기에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
<현행과 동일>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 <현행과 동일>

- 정기에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 <현행과 동일>